

수산물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2일, 주철현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철현 의원)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50세 이상인 취업·창업 희망자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

하여 현행법의 교육훈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산계고교 학생 등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정태)

하위 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전 준비 소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수산물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법률 시행 전 하위법령 개정 등의 준비 소요가 크지 않고, 취업·창업 희망자 등에 대하여 적시에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안 부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부칙 ----- <u>공포한</u> ----- -----.

법률 제 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중 “구성원에”를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 · 청년 · 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u>구성원</u> 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 훈련 사업 다. · 라.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구성원 또는 수산</u> <u>업 분야에 창업 · 취업할</u> <u>의사가 있는 자 등에</u> ----- ----- -----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